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782
----------	------

2021년 12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년 10월 14일, 김기대 의원 외 33명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20일

다. 상정일자: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8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1년 12월 17일 상정·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기대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바로 잡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정정함(안 제12조제2호).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자원순환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재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정의하고, 자원순환촉진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바로 잡으며,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연료·열·전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6.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7.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가공·조립·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발생된”을 “제1호에도 불구하고 발생된”으로, “곤란한”을 “어려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억제 등에”를 “사용 억제 등에 대해”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을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임명하고”를 “임명되고”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0조의”를 “제1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5조제1항의”를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사용억제, 자원의”를 “사용 억제, 자원”으로, “위

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억제”를 “사용 억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6.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7.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가공·조립·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발생된 폐기물 중 재사용할 수 있는

제3조(기본원칙) -----

1.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

것은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새활용(버려지는 물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용도를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해 자원이 최대한 순환되도록 할 것

3. (생략)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③ (생략)

제8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시 자원순환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자치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어려운 -----

3.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 사용 억제 등에
대해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1.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생략)
2.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4. (생략)

⑤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의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또는 해임된다.

⑥ (생략)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제10조의 징수교부금 활용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아야

----- 그렇지 않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2. -----
----- 사람

3. ----- 의원

4. (현행과 같음)

⑤ -----
----- 임명되고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기능) -----
----- 사항을 -----

1. 제10조에 따른 -----

2. 제16조제1항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생략)

제16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생략)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략)

③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재활용·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사업자,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 ~ 5.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재정적 지원 등) ① -----

-----.

1. ----- 사용 억제, 자원 -----
----- 위하여 -----

2. (현행과 같음)

3. -----
----- 위하여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용 억제

-----.